#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60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동아·김 윤·김문수

황운하 · 김교흥 · 차지호

이정문 • 황명선 • 박정현

박균택 • 허성무 • 정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 자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39조제3항제3호의2 중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u>30일 이</u>내의 휴가를 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 또 <신 설> 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한 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 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u>②</u> ~ <u>④</u>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 (생략)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 9. (생략)

④·⑤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괴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
하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
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 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